

의안번호	2211302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5. 8. 25.
추계번호	25B364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5조의7 신설 (빈집의 재생)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빈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개축·수리를 하여 주거, 사무실, 농장, 공동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재생하는 자에게 빈집의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65조의7 신설 (빈집의 재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빈집 개축·수리·유지 비용 지원(안 제65조의7제4항)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빈집의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개축·수리를 하여 주거·사무실·농장·공동작업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을 재생하는 자에게 빈집의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78,095개 동 수준임

※ [참고자료 1] 농촌 빈집 관리 현황

[참고자료 2]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빈집정비사업 예산 현황

-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의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재생 대상 빈집 수, 해당 빈집의 재생 조치 및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재생 대상 빈집 수}_{i,t} \times (\text{재생 조치 및 개축·수리·유지 평균 비용}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빈집 재활용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그러나 향후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될 시·군·구 및 해당 지역의 빈집 수, 빈집 재생에 따른 개축·수리·유지 평균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빈집의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1) 안 제65조의7(빈집의 재생)

⑤ 그 밖에 빈집의 재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1] 농어촌 빈집 관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 (빈집 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시·군·구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매입·철거·개축·수리·활용 등을 추진
 - － 수립된 빈집 정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실태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관리·정비를 위하여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빈집 실태조사 지원중
 - － (해양수산부) 어촌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지역별 빈집 수, 철거 수 등)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어촌 지역빈집조사(행정조사)를 수행
- ※ 2023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²⁾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농어촌·도시 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의 등급기준 등 일원화,” 2023.6.8.

□ 최근 4년간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현황

[표 1] 최근 4년간 시·도별 농어촌 빈집 현황: 2021~2024년

(단위: 동)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¹⁾			해양수산부 ¹⁾			관계부처 합동 ²⁾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	—	—	—	—	—	—
부산	30	21	32	30	15	26	146
대구	530	528	1,108	—	—	—	1,180
인천	587	470	522	174	540	267	413
광주	—	—	—	—	—	—	38
대전	—	17	—	—	—	—	123
울산	821	743	528	8	2	1	544
세종	371	647	653	—	—	—	688
경기	2,448	2,481	2,410	69	23	9	4,022
강원	3,380	3,886	4,363	1,254	1,891	2,177	4,752
충북	2,030	3,466	3,135	2,030	3,460	691	4,304
충남	3,986	3,901	4,771	1,654	1,115	1,320	5,767
전북	9,434	9,904	10,092	7,903	1,144	1,273	13,155
전남	17,648	16,310	15,138	12,167	7,998	9,316	16,225
경북	13,774	13,886	12,043	6,758	3,829	2,469	13,117
경남	9,416	9,106	9,589	3,394	3,130	3,350	12,850
제주	748	658	635	615	525	544	771
합계	65,203	66,024	65,019	36,056	23,672	21,443	78,095

주: 1) 2021~2023년 자료는 각 부처에서 지자체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자료임

2) 2024년 자료는 2024년부터 범부처 빈집 정비지원 TF(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에 따른 각 지자체별 농어촌 빈집 현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빈집정비사업 예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행법 제64조제3항³⁾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계획 기준임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25예산안
세종	철거·활용·관리 등	509
부여	철거·활용·관리 등	426
달성	철거	1,260
공주	철거·활용·관리 등	470
당진	철거·활용·관리 등	232
홍성	철거·활용·관리 등	333
정읍	철거·활용·관리 등	680
군위	철거·관리	84
정선	철거·활용·관리 등	485
춘천	철거·활용·관리 등	58
평창	철거·활용·관리 등	500
횡성	철거·활용·관리 등	590
서천	철거·활용·관리 등	200
군산	철거·활용	304
김제	철거·활용·관리 등	570
남원	철거·활용·관리 등	3,914
정읍	철거·활용·관리 등	680
경산	철거·관리	100
경주	철거·활용·관리 등	175

- 3)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표 3] 해양수산부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5년 예산(추정)
군산시	철거	454
군산시	활용	110
경주시	철거	500
경주시	철거 후 활용	1,000
경주시	안전조치 및 관리	10,000
경주시	공익적 목적 리모델링 활용	6,000
당진시	철거	110
당진시	철거 후 활용	57
당진시	안전조치 및 관리	25
당진시	리모델링	60
서천군	철거	112
서천군	철거 후 활용	48
서천군	안전조치 및 관리	4,048